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취소 사전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06. 29.

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장



-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취소처분 사전통지
-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, 제12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 서류의 명칭	송달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 사유
	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1	강○인	030603	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산척로2길 (산척동) (이하 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취소 사전통지 의견제출 안내	○ 필수 초기대면상담일에 미방문 (출석통지 2회이상 불응 및 연락두절)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취소 처분	연락두절 폐문부재

- 공고기간: 2026. 06. 29. ~ 2026. 07. 13.(15일간)
- 기타 사항은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수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조덕희(Tel. 031-231-480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